

대전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104716(본소), 2020가합10472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판기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최은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림

변론 종결2021. 9. 9.

판결 선고2021. 10.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831,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10,237,8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 피고는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4. 11. 29. 설립된 회사이다. C는 2005. 6. 13.부터 2008. 1. 1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D은 2006. 1. 3.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위 C 및 피고의 직원 E의 지인으로, 2016. 6.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F라는 이름으로 인력파견 등의 영업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약정

○ 원고는 2016. 초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갑제1호증, 을제1, 10호증, 증인 E의 증언 등 참조).

○ 원고는 대외적으로 피고에 소속되었으나, 대내적으로는 독립적인 근로자 파견사업을 한다.

- 원고의 팀을 'F'라고 칭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이 파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는 대신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 원고의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정산한다.

○ 피고는 2016. 6. 1. 회사의 목적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 파견사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추가하였다.

다. 2016.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와 피고의 정산 경위

1) 2016. 하반기 원고와 피고의 정산 ○ 원고가 영업을 시작한 2016. 6.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정산한 2016. 12.까지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영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을제12호증의1 참조).

2016. 6.	900,000	444,245	455,755
2016. 7.	1,350,000	8,153,439	-6,803,439
2016. 8.	10,496,020	31,386,536	-20,890,516,
2016. 9.	28,063,679	38,036,962	-9,973,283
2016. 10.	46,764,483	50,247,305	-3,482,822
2016. 11.	49,543,853	61,891,395	-12,347,542
2016. 12.	81,395,823	76,248,354	5,147,469
합계액	218,513,858	266,408,236	-47,894,378

○ 원고는 2016. 12.경 위와 같이 비용을 정산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1,229,680원을 수령하였다.

2) 2017. 상반기 원고와 피고의 정산 ○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비용을 정산한 2016. 12.경 후부터 2017. 6.경까지 다음과 같이 비용을 정산하였다. 원고는 '원고 급여'란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7,862,940원을 수령하였다(을제12호증의2 참조).

2016. 12.1) 2016. 하반기 정산을 한 후 발생한 항목이다.	133,642,595	92,454,757	41,187,838	
2017. 1.	1,725,000	8,957,446	-7,232,446	1,229,680
2017. 2.	76,786,072	110,041,121	-33,255,049	1,327,450
2017. 3.	120,097,479	97,499,981	22,597,498	1,327,460
2017. 4.	150,863,834	123,171,342	27,692,492	1,327,450
2017. 5.	139,221,418	129,415,594	9,805,824	1,325,450
2017. 6.	323,505,464	293,559,689	29,945,775	1,325,450
합계액	945,841,862	855,099,930	90,741,932	7,862,940

○ 피고는 2017. 상반기 발생한 수익금 90,741,932원에서 2016. 하반기 발생한 손실금 47,894,378원을 공제하였다(잔존 수익금 52,847,555원).

3) 2017. 하반기 원고와 피고의 정산 ○ 원고와 피고는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다음과 같이 비용을 정산하였다(을제12호증의3 참조).

2017. 7.경	154,937,636	144,933,791	10,003,845	1,320,990
2017. 8.경	174,447,892	160,210,948	14,236,944	12,739,650
2017. 9.경	231,308,756	211,775,819	19,532,937	12,739,650
2017. 10.경	212,331,758	201,126,722	11,205,036	19,083,530
2017. 11.경	249,056,926	229,243,219	19,813,707	19,083,530
2017. 12.경	242,412,225	225,875,703	16,536,522	20,145,460
합계액	1,264,495,193	1,173,166,202	91,328,991	85,112,810

○ 결국 2017. 12.까지 원고의 누적 수익액은 134,176,545원(2017. 상반기까지의 잔존 수익금 52,847,555원 + 2017. 하반기 수익액 91,328,991원)이고, 원고의 누적 급여액은 94,205,440원(2016. 12.경 급여액 1,229,680원 + 2017. 상반기 급여액 7,862,940원 + 2017. 하반기 급여액 85,112,810원)이다.

○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급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왔던 전도금2) 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였다(2017. 12. 31.까지 잔존 전도금은 11,861,789원이다. 을제13호증 참조). 따라서 원고는 2017. 12.까지 누적 급여액 55,205,440원(94,205,440원 - 39,000,000원)을 현실로 수령하였다.

2017. 8. 31.	8월 F(본사) 급여 - A 전도금 상계	6,000,000
2017. 9. 30.	9월 F(본사) 급여 - A 전도금 상계	6,000,000
2017. 10. 31.	10월 F(본사) 급여 - A 전도금 상계	9,000,000
2017. 11. 30.	11월 F(본사) 급여 - A 전도금 상계	9,000,000
2017. 12. 31.	12월 F(본사) 급여 - A 전도금 상계	9,000,000
합계액		39,000,000

라. 원고와 피고의 2018. 1. 초순경 정산 변경 합의 및 그에 따른 2019. 3.까지의 정산

1) 원고와 피고는 2018. 1. 초순경 정산 변경 합의 ○ 원고는 2018. 1. 초순경 피고에게 정산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정산 방법을 협의하였으나, '피고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비율'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3) 결국 원고와 피고는 추후 추가 논의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2018. 원고와 피고의 정산 ○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다음과 같이 비용을 정산하였다(을제12호증의4 참조).

2018. 1.	302,065,493	289,564,350	12,501,143	7,456,160
2018. 2.	316,637,391	302,690,253	13,947,138	13,842,540
2018. 3.	334,126,115	311,945,559	22,180,556	14,519,230
2018. 4.	330,879,420	309,106,728	21,772,692	14,519,220
2018. 5.	380,271,603	363,152,040	17,119,563	14,519,220
2018. 6.	365,731,309	331,187,156	34,544,153	14,519,220
2018. 7.	368,600,380	351,326,076	17,274,304	14,650,580
2018. 8.	338,838,229	319,812,796	19,025,433	14,650,580
2018. 9.	337,924,774	312,960,801	24,963,973	14,650,580
2018. 10.	365,078,557	339,441,324	25,637,233	14,650,580
2018. 11.	368,179,808	345,192,413	22,987,395	14,650,580
2018. 12.	360,977,066	352,910,368	8,066,698	14,650,580
합계액	4,169,310,145	3,929,289,864	240,020,281	167,279,070

○ 피고는 원고의 수익액에서 다음과 같이 매월 500만 원의 수수료와 피고가 주장하는 유보금을 공제하고 원고의 급여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급여액 167,279,070원을 수령하였다.

3) 2019. 3.까지 원고와 피고의 정산

2018. 1.	12,501,143	44,983	5,000,000	7,456,160
2018. 2.	13,947,138	-4,895,402	5,000,000	13,842,540
2018. 3.	22,180,556	2,661,326	5,000,000	14,519,230
2018. 4.	21,772,692	2,253,472	5,000,000	14,519,220
2018. 5.	17,119,563	-2,399,657	5,000,000	14,519,220

2018. 1.	12,501,143	44,983	5,000,000	7,456,160
2018. 6.	34,544,153	15,024,933	5,000,000	14,519,220
2018. 7.	17,274,304	-2,376,276	5,000,000	14,650,580
2018. 8.	19,025,433	-625,147	5,000,000	14,650,580
2018. 9.	24,963,973	5,313,393	5,000,000	14,650,580
2018. 10.	25,637,233	5,986,653	5,000,000	14,650,580
2018. 11.	22,987,395	3,336,815	5,000,000	14,650,580
2018. 12.	8,066,698	-22,751,368	5,000,000	14,650,580
합계액	240,020,281	1,573,725	60,000,000	167,279,070

○ 원고와 피고는 2019. 3. 31.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협업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1.경부터 2019. 3. 31.까지 다음과 같이 비용을 정산하였다(을제12호증의5 참조).

2019. 1.	404,048,579	366,607,799	37,440,780	14,671,150
2019. 2.	395,493,940	369,982,447	25,511,493	14,671,150
2019. 3.	406,620,881	396,292,736	10,328,145	10,810,480
합계액	1,206,163,400	1,132,882,982	73,280,418	40,152,780

○ 피고는 원고의 수익액에서 다음과 같이 매월 500만 원의 수수료와 피고가 주장하는 유보금을 공제하고 원고의 급여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급여액 40,152,78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2018. 1.부터 2019. 3.경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유보금 누적액은 13,459,979원(2018년 유보금 합계액 1,573,725원 + 2019. 3.경까지의 유보금 합계액 11,886,254원)이다.

2019. 1.	37,440,780	17,769,630	5,000,000	14,671,150
2019. 2.	25,511,493	5,840,343	5,000,000	14,671,150
2019. 3.	10,328,145	-11,723,719	5,000,000	10,810,480
합계액	73,280,418	11,886,254	15,000,000	40,152,780

마. 원고의 내용증명 발송

○ 원고는 2019. 5. 30.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의 협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유보액 등 29,831,493원을 2019. 6. 10.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갑제2호증 참조).

바.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으로의 이행

○ 원고는 2019. 6. 2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9,831,4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25.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차2886). 위 지급명령은 2019. 6. 28. 송달되었다.

○ 피고는 2019. 7. 4.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2, 13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업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피고가 보유 또는 유보하고 있는 금액 42,783,009원 중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자인하고 있는 지연이자 등 12,951,516원을 공제한 부당이득금 29,831,49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 내역	①	피고 보유 중인 원고 수익금 유보금	13,266,279	갑제1,2호증 참조
②	피고 보유 중인 퇴직충당금	5,390,351	갑제1,2호증 참조	
③	피고 보유 중인 연차수당 보관금	17,408,870	갑제1,2호증 참조	
④4) 원고가 제출한 내용증명(갑제2호증 제3번)에 따르면, 순번 ④ 내지 ⑦항이 피고 보유 중인 원고 수익금 유보금(순번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보유 중인 원고 수익금 유보금(순번①)과 별도로 순번 ④ 내지 ⑦항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특별히 항목이 중복된다는 취지로 다투지는 않으므로, 위 순번 ④ 내지 ⑦항은 피고가 유보금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손익계산서 상의 원가와 별개로 간접비용(일반관리비)으로서 매출액에서 공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행한다[2018. ~ 2019. 원고의 누적	2018년 법인 결산 세무사 수수료	1,580,909	을제2, 15호증 참조	

청구 내역	①	피고 보유 중인 원고 수익금 유보금	13,266,279	갑제1,2호증 참조
순이익(313,106,999원)이 원고의 급여, 피고 보유 중인 원고 수익금 유보금, 피고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295,698,129원)보다 크다. 그 차액 중 일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비용으로 보인다.				
⑤	2018년 외부회계법인 감사 수수료	3,432,000	을제3, 15호증 참조	
⑥	2019년 외부회계법인 감사 수수료	804,600	을제4, 15호증 참조	
⑦	2018년 영업배상책임보험료	900,000	을제6, 15호증 참조	
합계액	42,783,009			
공제 내역	⑧	지연이자, 장애인장려금 등	4,783,057	다툼 없는 사실
⑨	잔여 전도금	8,168,459	다툼 없는 사실	
합계액	12,951,516			
최종 청구금액 (청구내역 합계액 - 공제내역 합계액)	29,831,493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청구내역 중 순번 ①, ②항 및 공제내역 관련 주장

○ 원고 청구내역 중 순번 ①, ②항과 공제내역(순번 ⑧, ⑨항)은 다투지 않는다.

나) 원고 청구내역 중 순번 ③항 관련 주장

○ 원고 청구내역 중 순번 ③항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피고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책임을 면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연차수당 보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위 연차수당 보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 원고 청구내역 중 순번 ④ 내지 ⑦항 관련 주장

○ 원고 청구내역 중 순번 ④ 내지 ⑦항은 모두 피고가 지출한 간접비용에 해당 시기 원고의 매출비율5)

급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순번 ④ 내지 ⑦항과 같은 간접비용은 사무실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이다. 이러한 간접비용 중 원고의 매출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의 영업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은 공통 간접비용의 분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위 간접비용 역시 원고가 2018. 1.부터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매월 500만 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① 간접비용은 매출 증가에 따라 증가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수수료 500만 원에 간접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할 이유가 없다. ② 원고는 2017년에는 이미 순번 ④항의 비용이나 순번 ⑦항의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 만약 원고의 동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원고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연히 위 간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의 제반 사무 인프라를 이용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제반 행정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원고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였다.

나. 판단

1) 원고 청구내역 중 순번 ①, ②항 및 공제내역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순번 ①, ②항에 해당하는 돈에서 순번 ⑧, ⑨항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 청구내역 중 순번 ③항에 관한 판단 ○ 원고가 2019. 4. 1.부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F'에 속한 피고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 따라서 위 근로자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근로관계가 계속된다. 원고는 근로관계의 계속에 따라 추후 위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2019. 3. 1.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추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순번 ③항의 돈 역시 원고가 승계함이 타당하다.

- 위 근로자들에게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충당금(순번 ②항)과 위 연차수당 보관금(순번 ③항)을 달리 볼 이유도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위 연차수당 보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청구내역 중 순번 ④ 내지 ⑦항에 관한 판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수익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순번 ④ 내지 ⑦항의 돈을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문제된다.

가) 원고가 매출비율에 따라 간접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순번 ④ 내지 ⑦항의 돈을 부담하는데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가 2018. 1.경부터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손익계산서(을제12호증의4, 5)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비와 관련된 내용은 손익계산서에 일절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간접비용을 매월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이를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반기 별로 원고의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원고가 정산하여야 할 전도금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이, 간접비용 역시 전도금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었다면, 피고가 손익계산서에 전도금과 달리 간접비용에 관하여는 일절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②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제10호증)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8. 1. 초순경 수수료 500만 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귀하(원고)는 이런 설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본인 생각만 계속 피력하였으며 당사(피고)에 대해 이해를 구하거나 하는 노력 없이 당초 본인이 정한 5백만 원 지급만 고수하였습니다. 당사는 협업한 지 불과 1년여에 불과하고 학연이라는 인정에 따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는 분위기에서 계속되는 논쟁만 할 수 없어 결론을 미루고 일단 2018년도에 월 5백만 원 제시한 금액을 수취하기로 하였습니다(을제10호증 제3쪽).

③ 피고의 직원으로서, 2018. 1. 초순경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중재하려고 했던 증인 E 역시 「원고가

일단 피고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유보하고,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추후 정산을 예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간접비용을 부담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원고와 피고는 2018. 1. 초순경 이 사건 약정 중 정산 방법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원고가 그 이전인 2017년 일부 간접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2018. 1. 초순경 간접비용을 부담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가 지출하여야 할 간접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월 500만 원의 수수료와 별도로 간접비용에 대하여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고가 매출비율에 따라 간접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위 2. 나. 2).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간접비용분담 약정이 없더라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고가 매출비율에 상응하는 간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2017. 12.경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누적수익금 134,176,545원 중 39,971,145원을 공제한 94,205,4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의 수익금 중 29.7%를 공제하였다. 또한 피고의 직원 E은 2018. 1. 초순경 원고에게, 수익금의 30%를 피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당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2018. 1. 초순경 당시 피고는 원고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이 사건 약정의 정산 방법 변경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2017. 12.경까지의 정산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의 누적 수익액은 313,300,699원이므로, 피고가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는 약 104,433,566원(313,300,699원 * 30%)이다. 이는 피고가 실제로 같은 기간 지급받은 수수료 75,000,000원보다 다소 큰 금액이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비용 210,237,817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이다.

②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간접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수수료 75,000,000원과 간접비용 210,237,81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간접비용을 일부 부담한 2017. 12.경까지의 정산 방법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104,433,566원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이익을 부과한다.6) ③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간접비용 210,237,817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원고는 2018. 1.경 이후 F의 매출액을 크게 증가시켰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이익을 거두지 못한다(같은 기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누적 급여액은 207,431,850원에 불과하다).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신 원고 매출비율에 따른 간접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사무실 운영비 내역(을제11호증의2)에 따르면, 2017. 12.경까지는 월 500만 원 이하의 간접비용이 발생한 시기 역시 존재한다.

⑤ 원고의 영업(인력파견 등)과 피고의 영업(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사업 등)은 그 종류가 다르므로, 원고가 발생시킨 간접비용이 피고의 전체 간접비용 중 원고의 매출비율에 상응하는 부분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업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보유 또는 유보하고 있는 금액 42,783,009원 중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자인하고 있는 지연이자 등 12,951,516원을 초과한 29,831,493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9,831,4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사무실운영비는 피고가 지출한 간접비용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사무실운영비 중 원고의 매출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210,237,817원은 원고의 영업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은 공통 간접비용의 분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의 동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원고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연히 위 간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 위 2. 나.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 간접비용 분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위 2. 나.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간접비용분담 약정이 없더라도 원고가 매출비율에 상응하는 간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종록

판사차은주

판사최광진

1) 2016. 하반기 정산을 한 후 발생한 항목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0.부터 2017. 8. 14.까지 수회에 걸쳐 122,078,450원의 전도금을 지급하여 왔다(을제13호증 참조).

3) 원고는, 피고가 영업이익의 20%를 수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은 원고에게 그 대안으로 피고가 30%를 수령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을제10호증, 증인 E의 증언 등 참조).

4) 원고가 제출한 내용증명(갑제2호증 제3번)에 따르면, 순번 ④ 내지 ⑦항이 피고 보유 중인 원고 수익금 유보금(순번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보유 중인 원고 수익금 유보금(순번①)과 별도로 순번 ④ 내지 ⑦항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특별히 항목이 중복된다는 취지로 다투지는 않으므로, 위 순번 ④ 내지 ⑦항은 피고가 유보금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손익계산서 상의 원가와 별개로 간접비용(일반관리비)으로서 매출액에서 공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한다[2018. ~ 2019. 원고의 누적 순이익(313,106,999원)이 원고의 급여, 피고 보유 중인 원고 수익금 유보금, 피고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295,698,129원)보다 크다. 그 차액 중 일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비용으로 보인다].

5) 피고의 전체 매출액 중 원고의 'F'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6)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참조).